

개정 전	개정 후
제103조의3(세율) ① ~ ⑦ (생 략) ⑧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<u>국내주식</u>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표와 같다.	제103조의3(세율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----- ----- <u>주식</u> ----- ----- -----.
(표 생 략)	(표 현행과 같음)
⑨ · ⑩ (생 략)	⑨ · ⑩ (현행과 같음)